

◇개정이유

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학습교구의 기준을 완화하고, 법인묘지·사설화장시설·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·관리비,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설치·조성·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완화(안 별표 3 제2호가목)

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체모형,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의 갯수를 각각 4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줄임.

나. 행정처분기준 완화[안 별표 5 제2호가목18) 및 같은 호 나목6)]

1) 법인묘지·사설화장시설·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·관리비,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,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,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,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에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,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,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, 4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함.

2)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,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,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,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,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,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,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로 완화함.

<보건복지부 제공>

●고용노동부령 제271호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12월 27일

고용노동부장관 인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

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,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고용노동부 제공>

●고용노동부령 제275호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12월 27일

고용노동부장관 인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의2 본문 중 “1년에 한하여 200만원”을 “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폐업하거나”를 “폐업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,”로, “반납하여야”를 “반납해야”로 한다. 별표 1, 별표 1의2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그 훈련비용의 지원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부정훈련 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,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[별표 1]

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(제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,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해야 한다. 다만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(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)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.

나. 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.